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민**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IV. 사례 분석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어장의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굴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사례에 대한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고, 이용주체, 이용체계, 이용규칙, 집합적 장치 등 상호 다양한 관계를 문헌과 면담 및 토론 등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6개의 어촌계에 대하여 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상호 비교하였고, 어촌계를 방문하여 어촌계장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규약과 면담을 통하여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6712).

**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세계환경과섬연구소 특별연구원.

얻은 결론은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은 다음의 원리가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첫째, 공존의 원리이다.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은 이용자와 상호 공존할 때 가능하다.

둘째, 신뢰의 원리이다.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다.

셋째, 순응의 원리이다. 마을어장 관리는 규범과 규칙에 순응을 전제로 한다.

넷째, 나눔의 원리이다. 해양생태보존을 위해서는 서로 나누어야 한다.

주제어 : 마을어장, 어촌계, 마을어장관리규약, 해양생태보존, 해녀.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어장의 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굴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마을어장은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며 공동체 공간이다. 수산자원 서식장 확대 등 마을어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온난화와 오염수 등 외부환경에 의하여 마을어장이 황폐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마을어장에서 어업을 하는 해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70년 14,143명이었던 해녀는 1980년 7,804명, 2000년 5,789명, 2005년 5,545명, 2010년 4,995명, 2013년 4,50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10년 후면 2,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가 예상된다. 2012년 9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환경보전총회(WCC)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독특한 해양생태 지킴이로서의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보호’정책의제(M-108)를 승인하였다.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해녀의 보호 문제가 국제적으로 조명을 받고 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해녀뿐만 아니라 마을어장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양지킴이로서의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해녀들의 해양지킴이 대상인 제주마을어장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해녀직업의 지속가능성 보호 정책의 적실성을 고려하는 전제 속에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의 관점과 해양환경 보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해녀가 독특한 환경지킴이로서 평가받고 있고, 이들이 이용하는 마을어장에 대한 중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관리방식을 재조명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모델사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이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규칙과 실천을 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마을어장 모델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어장이라 함은 고기잡이를 하는 곳으로 풍부한 수산자원이 있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을 의미한다. 마을어장은 해안에 인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에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물을 관리·조성하고 포획 및 채취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수면을 말한다. 마을어장을 이용하여 마을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및 어업권 제도는 대한제국 시기의 어업법(1908)과 일제강점기 시기의 어업령(1911), 조선어업령(1923), 해방 후의 수산업법(1953)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 왔다.

마을어장을 이용하는 해녀들은 기계적 장치 없이 ‘물질’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해양 자원의 남획과 고갈을 막으며, 새로운 어로자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잠수들의 퇴출과 자원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고,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해초채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적 어로는 마을어장을 공유하고 있는 개별주체들이 그들

의 자원에 대한 권리가 상호 질적으로 공평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있는 것이며, 마을어장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쉽사리 초래되지 않는 것은 물질이라는 어로방식과 바다에 대한 종교적 세계관, 어장을 관리 감독하는 자율적 조직 활동 등이 있기 때문이다. 잠수들의 ‘물질’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라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를 지속시키려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어로행위이다¹⁾.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보존과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어장이 살아야 제주바다가 산다’는 목표하에 ‘마을어장 중심의 수산자원회복대책’을 2013년도부터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역 특성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 TAC제도의 내실화, 자율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로의 변환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마을어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을어장 관리주체인 어촌계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어장휴식년을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이용주체인 해녀들이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비한 해녀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어촌계는 자체적으로 마을어장 청소, 체장미달 생물에 대한 포획금지, 금채기 포획금지, 쓰레기 투기 감시 등 자발적으로 마을어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마을어장에 대한 논의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민족학적·문화적 측면에서 동해안 마을어장의 변동과 별신굿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²⁾, 갈등론적 측면에서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방안 연구³⁾, 권리적 측면에서 관매도와 가사도 및 가거도 어촌마을의 지선어장 이용관리 형태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⁴⁾와 제주도 해녀들

1) 안미정,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대한 권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151-152쪽.

2) 송기태, 「동해안 마을어장의 변동과 별신굿의 사회적 기능」, 『도서문화』 43, 2014.

3) 최영찬,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1(4), 2009.

4) 김 승, 「가거도 특집: 가거도의 마을관리 공동어장 이용형태의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연구』 7(1), 1997. 김 승, 「가사도 특집: 가사도 어촌마을의 지선어장 이용관리 형태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연구』 13(1), 2001. 김 승·진상대, 「관매도의 어촌마을 지선어장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 어떻게 오랫동안 과거의 어로방식을 지속하고 있는지를 여성들의 해양자원에 대한 권리 측면에 대한 연구⁵⁾, 사회학적 측면에서 마을어장의 위기와 가치의 재인식, 어촌의 재인식과 갯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⁶⁾, 환경적 측면에서 기름유출사건이 해녀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⁷⁾, 제도적 측면에서 사례를 통한 연안어장 이용제도 분석연구⁸⁾ 등이 있다.

마을어장은 공유자원으로서 공유자원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Ostrom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개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공동체의 자원이 고갈되는 소위 ‘공유의 비극’ 상황에서 시장도 정부도 아닌 지역 주민들의 자치적 노력에 의한 공유자원 관리가 유효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⁹⁾.

해양생태계의 보존 등에 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시기인 1998년 이후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존은 경험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 사회학습을 가속화하여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기 전에 인간과 생태계간의 보다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¹⁰⁾. 이는 공동체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험적

『한국도서연구』 16(2), 2004.

5) 안미정, 앞의 책.

6) 김 준, 「마을어장의 위기와 가치의 재인식」, 『도서문화』 38, 2011. 「어촌의 재인식과 갯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민속연구』 25, 2012.

7) 김도균, 「기름유출사고가 해녀공동체에 미친 사회영향」, 『도서문화』 39, 2012.

8) 김재형, 『공유자원의 자율관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7.

9)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희근·안도경(옮김), 서울: 랜덤하우스; 2010. 공유자원에 대한 권리적 측면의 해외 연구로는 Coleman, E. A. “Common Property Rights, Adaptive Capacity, and Response to Forest Disturbance”. *ICARUS workshop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Champaign, IL*. 2010. Grafton, R. Q., Squires, D. and Fox, K, J. “Private Property and Economic Efficiency: A Study of a Common-Pool Resource.” *Journal and Economics* 43 2000. 등을 들 수 있고, 제도적 측면의 연구는 Ostrom E. Hess C. *Private and Common Property Rights*. Surface, Syracuse University, 2007. Schott, S. “Output-Sharing as a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Instrument.” *Working Paper, School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Carleton University*. 2003 등이 있다.

10) 이태건·노병철·박지윤,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사랑, 578쪽.

으로 축적된 규범과 제도, 집합적 공유가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¹¹⁾. 공익에 적합한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해양개발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상호간의 조화·균형 유지, 멸종위기 또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해양생물의 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국민 참여 및 건전한 이용기회 증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공평한 부담, 공동체와 이해관계인에게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따른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육구를 실현하는 사회를 생태나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나눔의 사회적 원리는 첫째,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둘째 현재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능력은 생존육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무한정 확장되는 존재육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없이 부족하다. 셋째, 존재육구는 현실적으로 조절 가능하다. 넷째, 존재육구를 순화시켜 여기서 저감되는 재화와 서비스량을 부족한 생존육구 충족에 활용할 수 있다¹²⁾. 따라서 지속가능한 생태 보존을 위한 모델요소들은 경험적으로 축적된 규범과 제도, 집합적 공유가치, 생태나눔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공평한 부담, 공동체와 이해관계인에게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에 따른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연생태보존을 위하여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을 지속적으로 청소하여 오고 있다. 마을어장 관리규약에서 어장청소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육상오염원 등의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마을어장 서식환경 악화는 마을어장에 위협요인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마을어장 관리규칙과 실행의 관행을 통하여 다소 위협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11) 윤진숙, 『해양생태계의 관리방안 연구』, 2006, 30-31쪽.

12) 김지현·조승현·진상현·송형만·여형범·이혜경·여형범·김현옥·박치현·신승혜·구도완·오용선,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 아르케, 2010, 438쪽.

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어촌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계는 총 100개로서 대부분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어촌계는 어장의 위치, 면허면적, 구성원, 마을별 생활습관, 수확량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연구대상 선택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부지역 3개 어촌계(북촌리 어촌계, 종달리 어촌계, 하도리 어촌계)와 서부지역 3개 어촌계(구엄리 어촌계, 고내리 어촌계, 애월리 어촌계)를 선정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종달리 어촌계는 2012년과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어촌계로 지정되었다. 구엄리 어촌계는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어촌방문 재능기부 대상 어촌체험마을에 선정되었고, 해녀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체험마을 육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하도리 어촌계는 2013년 우수어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고, 201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다. 애월리 어촌계는 애월항 제2단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북촌리 어촌계는 제주시수협 관내 동쪽방면으로는 비교적 넓은 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어촌계이며 2014년부터 연안바다목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어촌계이다. 고내리 어촌계는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가장 큰 어장을 갖고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 사례연구 방법은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심층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며,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고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란 연구문제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가지고 진행되는 구조화되지 않은(unstructured) 탐색적 연구방법을 말한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연구목적, 표본, 자료수집, 분

석방법, 연구결과에 대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할 것인가, 양적 분석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¹³⁾.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질적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설문을 통한 일반적인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료 수집에 있어서 미리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연구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비구조화(unstructured)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사례에 대한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하고, 이용주체, 이용체계, 이용규칙, 집합적 장치 등 상호 다양한 관계를 문헌과 면담 및 토론 등을 통하여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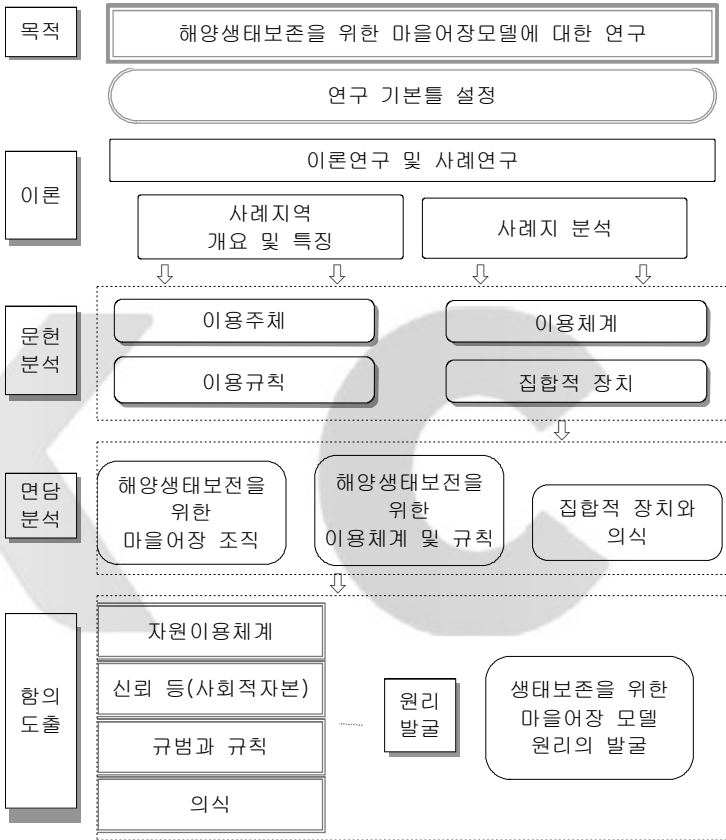
본 논문의 분석틀은 Ostrom이 제시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공유자원 제도에서 확인된 8개의 디자인 원리¹⁴⁾를 기초자료로 하여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의 원리를 도출하였다. Ostrom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보존모델의 요소들을 모두 함축할 수 있는 검증된 이론으로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와 사용 및 공여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을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마을어장 조직요건으로, 집합적 선택장치와 감시활동·점증적 제재조치·갈등해결장치 등은 해양생태보전을 위한 운영체계 및 규칙 요건으로,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과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를 의식 요건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이론연구를 통한 문헌분석과 면담분석을 통하여 함의

13) 강경민,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관한 연구』, 2011, 10쪽.

14)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90쪽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사용 및 공여규칙의 현지조건과의 부합성, 집합적 선택장치, 감시활동, 점증적 제재조치, 갈등해결 장치, 최소한의 자치조직권 보장,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를 공유자원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자인 원리로 제시하였다.

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 원리를 발굴하였다.



〈그림 1〉 분석틀

IV. 사례 분석

1. 문헌분석

1) 종달리 어촌계

① 사례지 특성

제주시 수협 관내 어장 중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한 바다어장을 갖고 있으며, 우도를 마주하고 옆으로는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62년 4월 제주어업협동조합이 개편되고 어촌계가 리와 구분되어 바다어장을 관리하게 되었다. 우선 출자금은 공동출자하여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바다어장을 이용하기 위한 입어를 해왔는데,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만 관리 입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1976년 4월 어촌계원을 정비하고 지선어장을 정리하여 4개조로 나누고 행사권을 주었다. 1983년 이후로는 어촌계에서 직영 판매 종사원을 두어 수집 판매하고 있다¹⁵⁾.

② 이용주체

행사자의 자격은 조합원의 자격을 득 한자 중 당계 관할주소지 내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계원가입은 총회서 의결 승인하고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금은 어촌계 가입 및 탈퇴비 명목 특별 적립기금으로 관리한다. 계원이면서 관할 주소지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타지 출타 후 귀향한지 2년 이하의 계원은 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행사할 수 있다.

③ 이용체계

마을어장을 이용하려면 어촌계장과 행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을어업권 행사는 공동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계원에 대하여 생산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행

1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2009, 319쪽.

사계약 시에 어획물 계통판매에 관한 사항과 규칙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생산량 어촌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어촌계와 행사계약을 체결한 계원은 본인 또는 가족 이외의 자로 하여금 당해 어장의 행사를 대행케 할 수 없도록 하고, 행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에 1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④ 이용규칙

마을어장의 각종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전체 계원의 참여하에 어장청소를 실시하고, 마을어장의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장여건에 따라 바위닦기, 패조류 투석, 수산종묘 살포 등 어장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식환경의 면적은 어장 면적의 1%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유용 수산동식물의 번식을 해치는 불가사리의 퇴치를 위하여 매년 어촌계 예산을 편성하여 물때마다 수시로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포획금지 채장, 불법어구의 사용금지, 불법어업의 감시 및 고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어장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계통출하, 조업일수 단축, 조업시간 단축, 생산량 조절 등 계획생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규약을 위반하거나 의무불이행을 한 자에 대해서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행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집합적 장치

집합적 장치로서 총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의장은 어촌계장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음력 1월 2일로 정하고 있다. 어장행사에 관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는 어촌계 마을어장 관리규약 개정, 마을어장의 행사자 선정, 행사료 요율결정, 자원관리를 위한 계의 기본방침, 수익금 처분,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결산, 계통판매 대상 등이다.

2) 하도리 어촌계

① 사례지 특성

하도리 어촌계는 해녀 항일운동의 발상지이며 해녀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녀수가 가장 많다¹⁶⁾. 어촌계가 조직되기 전에는 마을의 구장(이장)이 어장을 운영 관리했고, 1953년 1월 당시 의장 임덕인을 위시한 30명의 임원들이 해안관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지답사를 거쳐 각 동 경계선을 확정했다. 1962년 4월 제주어업협동조합 개편에 따라 1963년 3월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5월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어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¹⁷⁾.

② 이용주체

조합원은 누구나 마을어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당해 어촌계의 관할 수역에 주소가 있을 것, 마을어장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을 전제로 마을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③ 이용체계

마을어업권 행사는 공동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생산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사자는 어장면허 및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행사계약을 체결 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획물 계통판매에 관한 사항, 규약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생산량 어촌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행사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은 본인 또는 그 가족 이외의 자로 하여금 당해 어장의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사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6) 2014년말 기준 해녀수는 502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총 해녀수 4,415명의 11.4%를 차지하고 있다.

1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앞의 책, 309쪽.

④ 이용규칙

마을어장의 각종 산업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전체계원의 참여하에 어장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마을어장의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조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장여건에 따라 바위담이, 수산종묘살포 등 어장조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식환경 개선사업의 면적은 어장면적의 1%이상으로 하고, 유용수산동식물의 번식을 해치는 불가사리의 퇴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집중 구제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포획금지 채장, 불법어구의 사용금지,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 및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어장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하여 생산량의 적정화 유지 및 일시 다획행위 지양, 유채생산(둘러잡기)체계 확립, 자원조성사업 미실시 어장 발생 예방 등 계획생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소라생산은 매년 어장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별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하며, 생산된 소라는 전량 계통판매 하도록 하고 있다. 계획물량에 도달시에는 어장관리자는 생산중단을 명하도록 하고 행사자는 생산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사계약이 해지된 조합원은 계약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행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⑤ 집합적 장치

마을어장 관리 및 행사에 관하여 행사방법의 결정, 마을어장 행사자 선정, 행사료 요율결정, 자원관리를 위한 계의 기본방침, 수익금 처분, 마을어장 관리에 대한 결산, 계통판매 대상 어획물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3) 에월리 어촌계

① 사례지 특성

에월리는 제2단계 항만공사 중인 마을로서 에월리 어촌계는 에월리 해녀들과 금성리 해녀들, 어선세력들 등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금성리 어촌계는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단일 어촌계 구성이 되지 않아서 에월

리 어촌계에 편입되었다. 총회 때나 조합장, 어촌계장 투표권을 행사할 때 회의 개최 시에만 참여하고 그 외의 모든 일은 단독으로 처리하며 물질 작업일지를 결정하거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금성 해녀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있다¹⁸⁾.

- ② 이용주체, 이용체계, 이용규칙, 집합적 장치는 하도리 어촌계와 동일하다.

4) 북촌리 어촌계

① 사례지 특성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는 4·3 수난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바로 북촌리다. 4·3당시 마을을 잃고 인근 함덕리에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남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던 마을이다. 뱃물질을 주로 하는 이곳 해녀들은 북촌 1, 2, 3동과 해동, 한사동 등으로 나뉘는데 10여년 전에는 각 동별·단위별로 작업했던 것이 지금은 북촌해녀 85명이 어촌계장의 지시 아래 함께 작업한다¹⁹⁾.

- ② 이용주체, 이용체계, 이용규칙, 집합적 장치는 하도리 어촌계와 동일하다.

5) 고내리 어촌계

① 사례지 특성

고내리는 본동과 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이미 현촌이 설치되어 있을 만큼 큰 마을이었으며, 바다수심이 깊은 해안선과 대양을 전망할 수 있는 고내봉이 있고, 북쪽은 바다인데 ‘남당코지’와 ‘시니물’의 ‘고분여’로 물굽이를 이루고 있는 해촌이다. 2013년부터 해중립사업으로 인하여 어장이 점차 살아나고 있다. 특히 생활폐수로 바다오염이

18) 위의 책, 178-179쪽.

19) 위의 책, 253쪽.

심했으나 오수관공사 등으로 인하여 바다의 오염원이 제거되고 있다.

- ② 이용주체, 이용체계, 이용규칙, 집합적 장치는 하도리 어촌계와 동일하다.

6) 구엄리 어촌계

① 사례지 특성

구엄리 지역은 밭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으로 해안도로 주변의 해안절경이 매우 뛰어나며 특히 구엄포구 부근에 선조들이 염전으로 사용하던 500여평의 평평한 천연암반은 구엄리 어촌계에서 구엄어촌체험마을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엄리 어촌계는 해녀가 16명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물질하는 해녀는 몇 안되는 어촌계다. 중엄과 구엄 지역의 해녀들은 구엄리 어촌계에 속한다. 중엄리는 행정구역 주소는 신엄리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어장과 해녀들은 구엄리 어촌계로 소속되어 있다.

② 이용주체

입어할 수 있는 자격은 구엄리 어촌계원은 누구나 공동어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③ 이용체계

입어방법은 계원이 공동으로 입어하여야 하며 특정 계원과의 행사를 금하도록 하고, 계가 직영할 경우에는 생산장비를 어촌계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어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첫째 당해 어장에서 입어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둘째 다른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입어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셋째 입어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④ 이용규칙

사용어구는 낚, 호미, 칼, 팽이, 삽, 해조틀이, 칼퀴류, 추진장치 없는 작살류(고무줄은 사용할 수 있다)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동어장 내에서는 스쿠버다이빙의 수산 동식물 채포활동을 금한다. 공동어장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어장여건에 따라 바위담이, 돌넣기, 어부림 조성 또는 경운, 객토의 근로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작업 실시 면적은 어장 전체면적의 1%이상으로 하고 있다. 공동어장이 오염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전체 계원이 참여하여 어장청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유용 수산동식물의 번식을 해치는 불가사리의 퇴치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집중 구제기간을 설정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채포 금지기간, 채포 금지체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⑤ 집합적 장치

계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어장관리에 관한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총회 및 조합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결사항은 정관의 변경, 계원의 제명, 계의 해산,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자금의 차입,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결산의 승인, 경비의 부과·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결정, 어업권 또는 부동산과 이에 준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하고 있다.

7) 문헌분석 결과

① 이용주체 분석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지구별 수협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즉 조합원이 되어야 어촌계에 가입하여 어촌계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달리 어촌계는 행사자의 자격을 조합원의 자격을 득 한자 중 당계 관할주소지 내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하도리·애월리·북촌리·고내리 어촌계는 조합원은 누구나 마을어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당해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

20)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엄리 어촌계는 입어할 수 있는 자격은 어촌계원은 누구나 공동어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약으로 보면 종달리 어촌계와 구엄리 어촌계가 다소 이용주체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하도리·애월리·북촌리·고내리 어촌계가 완화된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이용체계 분석

어장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종달리·하도리·북촌리·고내리·애월리 어촌계는 모두 마을어업권 행사는 공동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생산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사자는 어장면허 및 어장관리규약에 의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사계약 체결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구엄리 어촌계는 입어방법 등은 동일하지만 계가 직영할 경우에는 생산장비를 어촌계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어권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첫째 당해 어장에서 입어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둘째 다른 어장에서 동종어업의 입어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셋째 입어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하고 있다.

이용체계 면에서는 6개 사례지 어촌계 모두 유사한 이용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용규칙 분석

종달리·하도리·북촌리·애월리·고내리 어촌계 모두 규약상으로 어장 청소, 불가사리 퇴치 등 의무부과, 포획 및 채취금지 기간의 설정 운영, 불법어구의 사용금지, 계획생산 체계의 유지 및 규약을 위반하거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엄리 어촌계는 규약상 감시 및 고발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없다.

④ 집합적 장치 분석

집합적 장치로서 총회를 두고 있고, 어촌계원이 많은 어촌계는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다. 즉 계원은 총회와 대의원을 통하여 의견을 전달하

는 장치는 모든 어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사례지 어촌계 어장관리규약이 비슷한 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은 표준 정관과 규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촌계 정관 표준(안)에 의하면 규약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정한 규약에 따라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¹⁾고 규정하여 마을어장 관리규약을 통일화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면담분석

면담은 Ostrom의 공유자원 제도에서 확인된 지속가능한 8개의 원리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관리 및 이용자의 노력에 대하여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종달리 어촌계는 2014년 12월 13일, 고내리 어촌계와 구엄리 어촌계, 북촌리 어촌계는 2015년 2월 5일 면담하였으며, 애월리 어촌계와 하도리 어촌계는 2015년 2월 6일 면담하였다. 면담장소는 6개 어촌계 모두 어촌계사무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1)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조직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조직은 문헌분석에서 살펴본 이용주체와 Ostrom이 제시한 8개 디자인된 원리 중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와 사용 및 공여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6개 어촌계장과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행사자의 자격은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경계는 구역도가 정해져 있다. 자율적인 규약으로 채포할 수 있는 규격이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금채기에는 채포

21) 어촌계 정관(안) 제8조 (규약) 제2항 이 개의 규약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정한 규약에 따라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다. 자원보존하기 위해서다. 규약대로 어장청소나 계획생산을 하고 있다.(중달리 어촌계장)

하도리어촌계는 7개의 동 단위로 나누어져 있다. 마을경계를 넘어서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작업일수가 있다. 어촌계장 밑에 자원관리위원이 7명 있다. 청소를 한다.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은 해야한다.(하도리 어촌계장)

규약이 있다. 채포금지 기간이 있다. 채장도 규정되어 있다. 청소는 한 달에 한번 한다. 한번 규약이 정해지면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 청소안하면 일정금액을 징수한다.(북촌리 어촌계장)

구역은 측량해서 정해져 있다. 금채기와 해야할 일 등이 규약에 정해져 있다. 해녀 마을 공동체에 이익이 되기 위해 행사를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날짜를 정해서 바다를 청소한다.(고내리 어촌계장)

회원자격이 있다. 회칙에 규정되어 있다. 조합에 가입해야 되고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어촌계에 가입금을 내어야 한다. 해녀들과 행사계약을 한다. 해녀회장이 정한 날에 바다에 입어하게 된다.(애월리 어촌계장)

어촌계정관과 어장관리 규약이 있다. 마을어장 관련하여 자율관리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해녀 외에는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금채기가 있다. 해녀든 누구든 지켜야 한다.(구엄리 어촌계장)

조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라고 할 때 조직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인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조직단위)와 사용 및 공여규칙(제도나 규칙)은 마을어장관리규약과 면담을 통하여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즉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관리 조직은 6개 어촌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이용체계 및 규칙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이용체계 및 규칙은 문헌분석에서 살펴본 이용체계와 이용규칙, 그리고 Ostrom이 제시한 8개 디자인된 원리 중 집합적 선택장치, 감시활동, 점증적 제재조치, 갈등해결 장치에 대하여 6개 어촌계장과 면담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을어장 관리규약과 자율관리 규약이 있다. 어촌계장, 잠수회장, 판매종사원 1명, 각 동 2명이 돌아가면서 감시활동을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다. 사용자들 간의 분쟁에 대하여 여기는 그런 분쟁이 없다.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어촌계 규약으로 정한다.(종달리 어촌계장)

바다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체장이 작은 것을 잡았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제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작은 소리를 채취한다든지 하면 3일 동안 규약을 어긴 마을(동) 전체에 대하여 입어를 중단시킨다. 갈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다.(하도리 어촌계장)

감시활동을 한다. 주로 어촌계장이 한다. 여름 때는 해녀들과 한달동안 감시한다. 점증적 제재조치는 없다. 신중하게 조사한다. 금지규격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북촌리 어촌계장)

조를 구성하여 감시활동을 펼친다. 밤에 주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밤에도 감시활동을 한다. 청소하러 안 나오면 벌금을 받는다. 금채기 시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어촌계는 갈등관계가 없다.(고내리 어촌계장)

감시활동을 한다. 한 달에 한번 청소를 실시한다 해녀들은 거의 참석한다. 점증적 제재조치는 없다. 바다에 들어가는 시간이 50일에서 60일 정도 된다. 잡아오면 바로 측정한다. 작은 것들은 전부 골라내어 공동어장에 투입한다. 분쟁은 없다.(애월리 어촌계장)

툇을 할 때는 바다지킴이를 선정하여 급역을 지급하면서 감시한다. 청소하러 안 나오면 부담금을 내거나 그렇지 못한다. 여기는 발농사가 생업이다. 분쟁과 관련하여 마을어업권 관련 분쟁이 없다. 어장에 대한 구역이 있다.(구엄리 어촌계장)

6개 어촌계장과 면담결과 Ostrom이 제시한 8개의 디자인 원리 중 집합적 선택장치, 감시활동, 갈등해결장치 등은 6개 어촌계가 모두 적합하게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증적 제재조치는 종달리 어촌계가 취하고 있으며, 하도리 어촌계는 점증적 제재조치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북촌리 어촌계와 애월리 어촌계, 고내리 어촌계와 구엄리 어촌계는 완화된 편이다.

3) 집합적 장치와 의식 요건

조직이 유연성을 가지려면 규칙의 개정예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의 자원은 주위 자원과의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해양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단위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조직단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하게 하고 있다. 어촌계원이 되는 것이 엄격하므로 외부에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 어촌계는 법인조직이며 소득 등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이다.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금채기만은 꼭 지켜야 한다.(종달리 어촌계장)

자원이란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특성이 있다. 나는 11년 동안의 통계를 갖고 있다. 바다를 읽을 수 있다.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 보다는 내가 우리바다를 연구하여야 한다. 객관화되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하도리 어촌계장)

규약제정에는 계원들이 참여하여 한다. 자원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바다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 상급기관인 시청과 도청의 공무원 인사가 자주 있다. 전문성을 살려주었으면 한다.(북촌리 어촌계장)

해녀 등 구성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문이 활짝 열려있다. 백화현상에 대한 원인은 우리만 안다. 바다를 직접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와 생활폐수가 오염의 원인이다. 생활폐수가 바다로 오지 못하게 오수공사를 한 후에는 바다가 좋아졌다.(고내리 어촌계장)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을 한다. 총회에서 인준하면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자체적인 규약을 우선적으로 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자율관리어업을 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마을어장을 지키려고 자율관리어업을 하고 서로 지키려고 한다.(애월리 어촌계장)

주민이 최소한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정관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은 어촌계원이 참여하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다. 생명체가 서식지에서 계속 자라는 것은 후손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서식지를 이탈하거나 폐사하여 자원이 줄어든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구엄리 어촌계장)

최소한의 자치조직권은 6개 어촌계 모두가 보장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0개의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34개의 어촌계는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에 속하여 있다. 마을어장 체계가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용, 제공, 감시활동, 집행, 분쟁해결, 운용활동은 중층의 사업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TAC제도이다. TAC제도는 현재 소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데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6개 어촌계장과 면담 결과 TAC제도는 시행초기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의식적 측면에서 종달리 어촌계는 자원관리와 자율공동체의 정착, 하도리 어촌계는 마을어장에 대한 부단한 연구와 TAC제도의 보완 등을 제시하고 있고, 북촌리와 고내리 어촌계는 오폐수의 정화, 애월리 어촌계는 자율공동체의 확립, 구엄리 어촌계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분석을 통한 생태보존요소

이론적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생태보존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축적된 규범과 제도, 집합적 공유가치, 생태나눔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평한 부담,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인에게 해양생태계의 관리에 따른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문헌분석과 면담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경험적으로 축적된 규범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마을어장 관리는 어장관리규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실천 및 관리되고 있으며, 규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집합적 공유가치를 가지고 있다. 마을어장은 이용자 공동체가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장청소를 통한 어장환경개선, 작업시간, 자원보존을 위한 공동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생태나눔과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공평한 부담을 상호 지우고 있다. 연구대상 어촌계 모두 이용규칙을 통한 어장조성사업, 유해동물 퇴치, 총회에 의한 의사결정, 불법어업 제한 등 의무부과 사항에 대하여 공평하고 부담하고 있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이해관계인에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따른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마을어장의 공동관리, 금채기의 준수, 계획생산 등 생산량 조절, 어장감시 등을 통한 노력으로 자원의 번식 및 생산은 지역공동체와 이해관계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V. 결론

1. 발견할 수 있는 원리

1) 자원이용체계 측면 : 공존의 원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으로서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도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다. 6개 어촌계별 마을어장 관리규약과 어촌계장과 면담을 통하여 찾아낸 첫 번째 합의와 원리는 공존의 원리이다. 즉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모델은 이용자와 공존할 때 가능하다.

행사는 어촌계 동의없이 마을어장에 들어갈 수 없다. 해녀는 어촌계와 계약을 맺어서 행사할 수 있다. 금채기에는 채포할 수 없다. 자원보존하기 위해서다. 규약대로 어장청소나 계획생산을 하고 있다(종달리 어촌계장). 어촌계장 밑에 자원관리위원이 있다. 7명의 관리위원이 있다. 청소를 한다.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을 해야한다(하도리 어촌계장). 청소는 한 달에 한번 한다. 청소상황을 제출한다. 한번 규약이 정해지면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북촌리 어촌계장). 물건들도 올해가 좀 나아진 편이다. 인공어초 투석 해주니까. 날자를 정해서 바다를 청소한다(고내리 어촌계장). 계는 공동작업이다(애월리 어촌계장). 마을어장 관련하여 자율관리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금채기가 있다. 해녀든 누구든 지켜야 한다(구엄리 어촌계장).

2) 사회적자본 측면 : 신뢰의 원리

대체로 사회적 자본이라 함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6개 어촌계의 마을어장관리규약과 어촌계장과 면담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두 번째 합의와 원리는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사용자들 간의 분쟁에 대하여 여기는 그런 분쟁이 없다. 마을어장 관련된 것은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바로 정리한다. 어장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 속하여 있

다.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어촌계 규약으로 정한다(종달리 어촌계장). 갈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분쟁을 겪어보지는 않았다(하도리 어촌계장). 작은 것은 골라서 공동어장에 투여한다. 공동어장에서 자라면 수확을 하게 된다. 작업은 공동으로 한다(북촌리 어촌계장). 우리 어촌계는 갈등관계가 없다(고내리 어촌계장). 분쟁은 없다(애월리 어촌계장). 마을어업 관련 분쟁이 없다(구엄리 어촌계장).

3) 규범과 규칙 측면 : 순응의 원리

조직에 있어서 제도와 규칙은 조직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6개 어촌계별 관리규약과 어촌계장과 면담을 통하여 규범과 규칙측면에서 찾아낼 수 있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순응의 원리이다. 즉 마을어장 관리는 규범과 규칙에 순응을 전제로 한다.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다. 규약을 위반하여 행사하는 사람이 없다(종달리 어촌계장). 점증적 제재조치에 대하여 제장이 작은 것을 잡았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제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작은 소라를 채취한다는지 하면-3일 동안 규약을 어긴 마을(동) 전체에 대하여 입어를 안시킨다(하도리 어촌계장). 개인작업은 개인의 작업량에 따라 분배하고 공동작업한 것은 공동으로 분배한다(북촌리 어촌계장). 우리바다는 우리가 지킨다는 의식이 향상되어 거의 참석하는 편이다. 금채기 시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고내리 어촌계장). 한달에 한번 청소를 실시한다. 해녀들은 거의 참석한다(애월리 어촌계장). 어장에 대한 구역이 있다. 해녀들이 어디가 경계라는 것을 안다(구엄리 어촌계장).

4) 의식적 측면 : 나눔의 원리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어촌계는 공동체적 유산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개별 어가 및 어촌 마을의 생존과 번영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직이다.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어촌계는 지속가능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6개 어촌계와의 마을어장 관리규약과 면담을 통하여 찾아낸 네 번째 함의와 원리는 나눔의 원리이다.

어촌계는 법인조직이며 소득 등을 목적으로 한 공동체이다(종달리 어촌계장). 바다는 왜 바다인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이다. 바다는 교감의 장이다. 해녀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귀하다고 하는 것이다. 해녀들이 고령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바다에는 희망이 있다(하도리 어촌계장). 자원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오폐수 처리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바다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북촌리 어촌계장). 원인은 우리만 안다. 바다를 직접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생활폐수가 오염의 원인이다. 생활폐수가 바다로 오지 못하게 오수공사를 한 후에는 바다가 좋아졌다(고내리 어촌계장). 자율관리를 스스로 해 나가야 한다. 자율관리어업은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애월리 어촌계장). 생명체가 서식지에서 계속 자라는 것은 후손을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먹을 것이 없으면 서식지를 이탈하거나 폐사하여 자원이 줄어든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먹을 것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구엄리 어촌계장).

2.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어촌계 사례를 중심으로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원리를 발굴하는데 있음은 서두에서 밝혔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6개의 어촌계에 대하여 마을어장 관리규약을 상호 비교하였고, 어촌계를 방문하여 어촌계장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 모두 해양생태보존모델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을 부인하지 않았다. 어촌계장들은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보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견학하면서 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마을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아울러 경험적으로 축적된 규범과 제도, 집합적 공유가치, 생태나눔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평한 부담, 지역공동체와 이해관계인에게 해양생태계의 관리에 따른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 등 생태보존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은 다음의 원리가 있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첫째, 공존의 원리이다. 해양생태보존을 위한 마을어장 모델은 이용자

와 상호 공존할 때 가능하다.

둘째, 신뢰의 원리이다. 신뢰는 지속가능성의 원천이다.

셋째, 순응의 원리이다. 마을어장 관리는 규범과 규칙에 순응을 전제로 한다.

넷째, 나눔의 원리이다. 해양생태보존을 위해서는 서로 나누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민, 『공유자원의 준사유화 과정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11.
- 김 승, 「가거도 특집: 가거도의 마을관리 공동어장 이용형태의 변천과정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연구』 7(1), 한국도서(섬)학회, 1997.
- 김 승, 「가사도 특집: 가사도 어촌마을의 지산어장 이용관리 형태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연구』 13(1), 한국도서(섬)학회, 2001.
- 김 승·진상대, 「관매도의 어촌마을 지산어장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연구』 16(2), 한국도서(섬)학회 2004.
- 김 준, 「마을어장의 위기와 가치의 재인식」, 『도서문화』38,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1.
- _____, 「어촌의 재인식과 갯벌인식 증진을 위한 연구」, 『민속연구』2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2.
- 김도균, 「어촌마을의 사회자본과 어촌계: 3개의 어촌마을 비교연구」, 『농촌사회』 20(1), 2010.
- 김재형, 『공유자원의 자율관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7.
- 김지현·조승현·진상현·송형만·여형범·이혜경·여형범·김현옥·박치현·신승혜·구도완·오용선, 『생태사회적 발전의 현장과 이론』, 도서출판 아르케. 2010.
- 송기태, 「동해안 마을어장의 변동과 별신굿의 사회적 기능」, 『도서문화』 43,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14.
- 안미정, 「해안마을 여성의 공동어로와 자원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2), 역사문화학회, 2007.
- 윤진숙, 『해양생태계 관리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6.
- 이태건·노병철·박지윤,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사랑, 2001.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제주해녀의 생업과 문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2009.
- 최영찬, 「마을어장 이용에 따른 어촌계와 주민간의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21(4), 한구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소, 2009.
- Coleman, E. A.. “Common property rights, adaptive capacity, and response to forest disturbance” *ICARUS workshop o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Champaign*, 2010.

- Grafton, R. Q., Squires, D., Fox, K, J. “Private property and economic efficiency: a study of a common-pool resource” *Journal and Economics* 43, 2000.
- Ostrom E. Hess C. “Private and common property rights” *Surface, Syracuse Univerty*, 2007.
-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옮김). 랜덤하우스; 2010.
- Schott, S. “Output-sharing as a common-pool resource mamagement instrument” *Working Paper, School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Carleton University*.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Model of Village Fisheries for Marine Ecology Conservation

Kang, Kyeong-M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principl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model of village Fisheries for marine and ecology preservation through case study of management of village fisheries, primarily focused on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used methodology comb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rough this study, I tried to compar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village fisheries between village to village cases among six selected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I conducted intensive interviews with the chief of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about some achievements and effectiveness of their management at their organizat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of regulations is resulted as quires following principles:

First, When ecology preservation models bring benefits to both village fisheries and users, we can become can say it is effective.

Second, credibility is the source of sustainability.

* Jeju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Special Researcher, Jeju National University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Institute Special Researcher.

Third, as for good management of village fisheries, it requires for them to respect or keep basic regulations and rules for handing those activities.

Fourth, users must share spirits of keeping their community alive in order to achieve marine and ecology preservation in their communities.

Key words : village fisheries,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management regulations for village fisheries, marine and ecology preservation, female divers

교신: 강경민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강사
(E-mail : obama2@naver.com)

논문투고일 2015. 04. 27.

심사완료일 2015. 06. 06.

게재확정일 2015. 06. 10.